

【제정·개정이유】

[일부개정]

◇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지역주민에 대한 재활서비스를 확대하고 지역의 질병 예방에 관한 보건의료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보건소의 전문인력 최소 배치 기준에 작업치료사와 **보**

건교육사 직종을 추가하려는 것임.

<보건복지부 제공>

지역보건법 시행규칙

[시행 2019. 10. 3] [보건복지부령 제624호, 2019. 4. 2, 일부개정]

【제정·개정문】

○ 보건복지부령 제624호

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.

2019년 4월 2일

보건복지부장관 (인)

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

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2 제1호 표의 비고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직종별	구분		광역시의 구, 인구 50만명 이상인 시의 구 및 인구 30만명 이상인 시	인구 30만명 미만인 시	도농복합형태의 시	군	보건의료원이 설치된 군
	특별시의 구	시					
의사	3	3	3	2	2	1	6
치과의사	1	1	1	1	1	1	1
한의학사	1	1	1	1	1	1	1
조산사	(1)	(1)	(1)	(1)	(1)	(1)	(1)
간호사	18	14	14	10	14	10	23
약사	3	2	2	1	1	1	2
임상병리사	4	4	4	3	4	2	4
방사선사	2	2	2	2	2	2	3
물리치료사	1	1	1	1	1	1	2
작업치료사	1	1	1	1	1	1	2
치과위생사	1	1	1	1	1	1	1
영양사	1	1	1	1	1	1	2
간호조무사	(2)	(2)	(2)	(2)	(2)	(2)	(6)
보건의료정보관리사	-	-	-	-	-	-	1
위생사	(3)	(3)	(3)	(2)	(2)	(2)	(2)
보건교육사	1	1	1	1	1	1	1
정신건강전문요원	1	1	1	1	1	1	1
정보처리기사 및 정보처리기능사	(1)	(1)	(1)	(1)	(1)	(1)	(1)
응급구조사	-	-	-	-	-	(1)	1

별표 2 제1호 표의 비고 제2호 중 "한의사의 기준은"을 "한 의사"로 하고, 같은 비고 제5호 중 "이 기준을 조정하여 배치할 수 있다"를 "조정할 수 있다"로 한다.

부칙

이 규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